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환 경 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 등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2021. 4.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경미한 시설 변경 시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이행 및 주민고지 등에 관한 사항(제19조, 별표 4 및 별표 10 개정,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 신설)

- 1) 유해화학물질별 규정수량 기준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수준을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유·누출 사고 시 외부영향이 거의 없는 하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사업장 및 의료기관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작성·제출 등 이행 면제
- 2) 기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중 비교적 화학 사고 예방·대응에 필요성이 낮고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하고, 유·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하도록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을 정비
-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경우, 해당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관리에 사항을 이행하고, 이 중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기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방법·주기 등을 규정·정비

4)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에게 법에서 정한 화학사고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고, 해당 고지의 방법·주기 등을 규정·정비

나. 유·누출 사고 시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연락체계, 주민 보호 및 대피, 사고지원 및 복구 계획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야 하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 화학물질안전원에 협의하도록 관련 규정 마련 (제20조 개정)

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영업변경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증설 및 이설, 물질변경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가 확대될 때에만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 절차·방법 등 규정 정비 (제19조의3 및 제29조 개정)

라. 영업변경신고 사항인 화학사고 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미한 시설 변경 시에는 우선 가동 후 변경일로부터 30일 내 설치검사를 받고 60일 내에 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제29조 개정)

마.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사고 예방·대응에 관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제5조의3, 제14조,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31조,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및 별표 13 개정,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 삭제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대상 및 수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유해화학물질을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진열하는 시설
9.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3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해당하지 않

는 사업장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10의 상위 규정수량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④ 유해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수량 등에 따라 취급 사업장을 달리 구분하는 판단기준 및 판단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및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1호서식(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2.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해당시설의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3.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

출해야 하는 자: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자: 이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

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자가 별표 4 제4호나목, 제5호가목·나목 및 제6호가목·나목·다목의 작성항목을 하나의 사업장에서 작성하기 어렵거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작성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

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부존재 확인서

⑦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방법,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 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 하려는 경우

2.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범생산을 위한 변경 등 시장 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시적인 변경으로 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 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나.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4 제6호나목의 주민

보호 및 대피 계획 중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대상,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가위험도·나위험도·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의3호서식을 적용한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 ②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에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과실, 중과실 또는 취급시설의 취급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법에 따라 벌칙, 과징금·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화학사고 및 취급시설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

려하여 검토할 때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
한 시설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⑤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한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장 기본정보 및 주변 환경 정보에 관한 사항

2. 장외평가정보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비상대응정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3개월 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심사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변경할 내용이 제1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서면점검: 매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이행 상황을 확인하여 점검한 자료를 받아 검토

2. 현장점검: 적합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점검하고(나 및 다위험도 사업장은 제외한다), 그 이후는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실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계획을 세워 이행점검(이하 “특별이행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별도의 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이행점검 또는 특별이행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검결과를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표 7 제2호서목2)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용·방법·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통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6(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①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제19

조제2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 내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만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달
4.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시청·구청·군청 및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게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는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우편주소 제공, 공청

회 개최, 관할 시청·구청·군청과 주민 자치센터의 게시판 이용,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할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는 자가 서면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경우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내용·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 제목“(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연락체계
2. 주민 보호 및 대피
3. 사고지원 및 복구
4. 비상대응 협의체계
5. 그 밖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한정한다)을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 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자

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및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공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제19조제7항”을 “제19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급시설의”를 “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로, “검토결과”를 “결과”로, “4년”을 “1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고위험도”를 “가위험도”로,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위험도”를 “나위험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저위험도”를 “다위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이 아닌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서식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체점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표기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제조·사용시설, 보관·저장시설 및 운반시설 등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증가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나목 중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을 “취급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제2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를 “영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하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고, 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합하다고 검토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한 경

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취급시설은 변경완료일부터 가동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검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9조제6항(중전의 제3항) 중 “별지 제45서식”을 “별지 제4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5항의 검사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제29조제7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6항까지”로 한다.

제3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니면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취급시설만 설치·운영

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를 “제조·사용시설 및 보관·저장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체 없이”를 “7일 이내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한다.

제37조제2항 본문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해야”로, “안전교육을”을 “안전교육(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별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8조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월 30일”을 “8월 31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4조제1항제5호 중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 제5호의4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 및 수량 등: 2021년 6월 30일
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출: 2021년 6월 30일
3.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현장조사 및 이행: 2021년 6월 30일
4. 제19조의6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고지: 2021년 6월 30일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7,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 별표 4의3, 별표 4의4를 삭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 중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취급시설”로, “법 제23조제2항”을 “법 제23조제5항”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를”로, “장외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안전성 확보방안”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기재된 안전관리계획”으로 하고, 비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의2 제3호다목 중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한다.

별표 6의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 마목 중 “장외영향평가와 안전성 향상 방안”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하며, 같은 표 별표 6의3 제3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별표 9 제2호 내용은 삭제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3의 보고사항란 중 “장외영향평가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표 위해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을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 제31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3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4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의 비고란 중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를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전자 시스템(문서)“을 활용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중 “업종”을 신설하고,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여부”로 하고, 첨부서류란 중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1부(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를 “1.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1군 또는 2군 취급사업장이 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업종”을 신설하고, “위해관리계획서 대상 여부”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여부”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으로 한다.

별제 제48호서식의 처리절차 중 “현지확인”을 “필요시 현지확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 별지 제46호 및 제47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적용을 받지 않은 자가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 또는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 단위에서 사용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규칙 별표 4의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대보유량은 제1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장 단위로 한다.

제5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전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고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제19조의4제1항의 다위험도

② 이 규칙 시행 전 마지막 안전진단일부터 해당 주기를 적용하고, 개정된 규칙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12년마다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해당 주기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제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6조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칙 제778호 제3조에 따른 이행점검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위해관리계획서를 마지막으로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점검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하고, 제19조의5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이행점검 중 현장점검 대상 사업장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는 종전의 사업장 내 취급시설의 위험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도를 적용한다. 다만, 위험도의 수준은 고위험도·중위험도·저위험도 순서로 적용한다.

③ 법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적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9조의5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점검주기는 제19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검주기를 적용한다.

제7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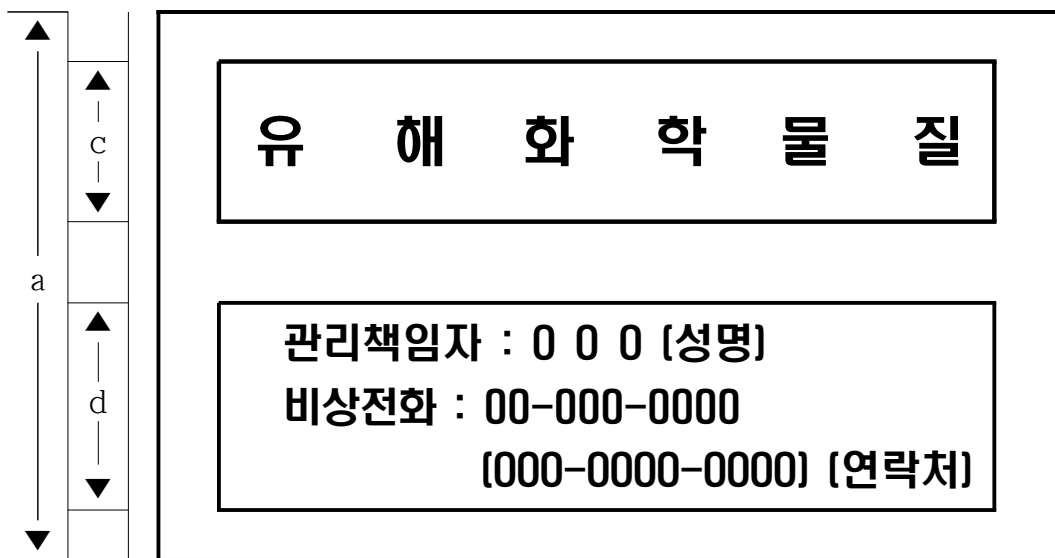
제8조(유독물질 지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라 2019년 3월 31일 이후 지정된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고시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나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보관·저장시설,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 b —————→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4)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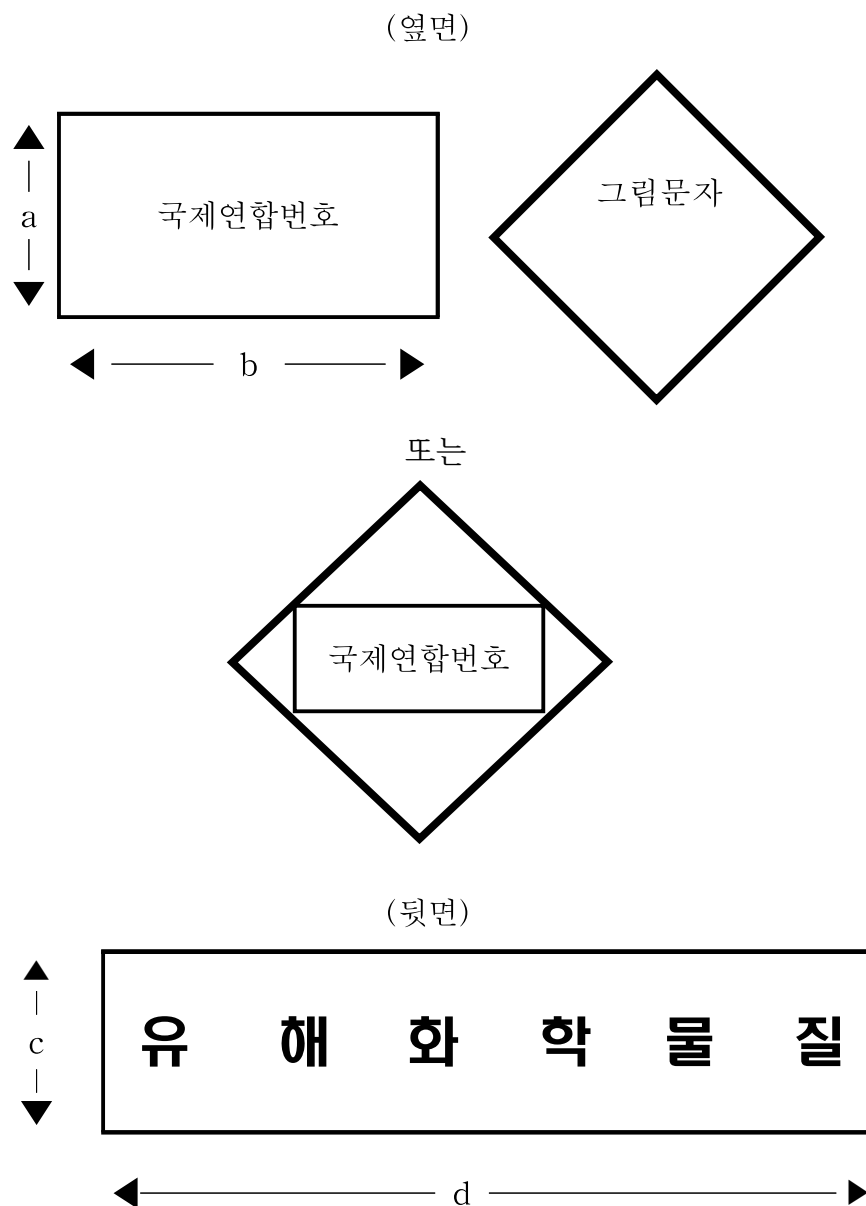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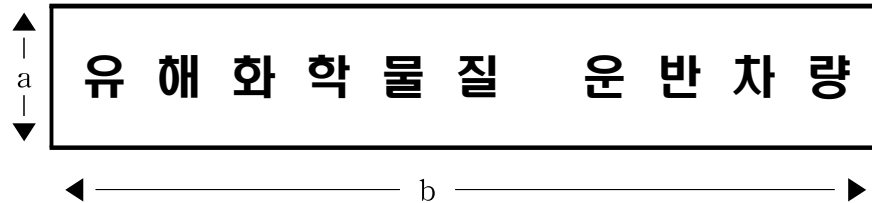


- 2) 양식크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cm 이상, a=10cm 이상, b=25cm 이상, c=20~30cm, d=80~100cm 이어야 한다.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 4) 그림문자: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이하 “UN”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 이하 “RTDG”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되,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 7) 유해·위험성 우선순위
 - 가) 방사성 물질
 -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 다) 가스류
 -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 바) 자연 발화성 물질
 - 사) 유기과산화물
 -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8)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앞면에 가로 $b = 30\sim 80\text{cm}$, 세로 $a = 10\sim 20\text{cm}$ 이어야 한다.

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N RTDG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UN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시기준의 세계조화 시스템, 이하 “GHS”라 한다) 표지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연구 목적의 시료 및 수출입과정에 있는 완제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2) GHS 표지의 명칭은 물질명을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에 해당하는 ‘감탄부호’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

- 자가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가 가능하다.
 -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를 코드번호로 대체할 수 없다.
 -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나. 경고표지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가) UN RTDG에 따른 표지



<인화성 액체인 경우 예시>

나) UN GHS에 따른 표지

	<p>제품정보</p> <p>○ 신호어 :</p> <p>○ 유해위험문구:</p> <p>○ 예방조치문구 :</p> <p>○ 공급자 정보 :</p>
---	---

<인화성 액체인 경우 예시>

2) 규격

가) UN RTDG에 따른 표지 규격

- (1)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mm × 100mm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 (2) 물질명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mm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kg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mm 이상의 높이이어야 하며, 5ℓ 이하 또는 5kg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이어야 한다.

나) UN GHS에 따른 표지 규격

(1) 용기의 용량별 표지 크기

용기 · 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 · 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cm ²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cm ²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cm ² 이상
500ℓ 이상	450 cm ² 이상

- (2) 그림문자의 크기는 GHS 경고표지 규격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² 이상이어야 한다.
- (3) 위험물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

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4)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내부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5)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경고표지를 용기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 제외)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경고표지의 표시방법

1) 이중용기

가) 외부용기

(1) RTDG 적용을 받는 물질

외부용기에 나목1)가) UN RTDG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RTDG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

외부용기에 나목1)나) UN GHS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나) 내부용기

(1) RTDG 적용을 받는 물질

내부용기에 나목1)가) UN GHS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되, 표지 내부의 그림문자는 RTDG 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RTDG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

내부용기에 나목1)나) UN GHS에 따른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다) 비고

(1)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있는 용기를 말한다.

(2)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3) "내부용기"란 운송을 위하여 외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

가) RTDG 적용을 받는 물질

용기에 나목1)가) UN RTDG에 따른 표지와 나목1)나) UN GHS에 따른

표지를 모두 부착하여야 한다. 단, RTDG 그림문자와 의미가 중복되는 GHS 그림문자는 GHS 표지 내에서 생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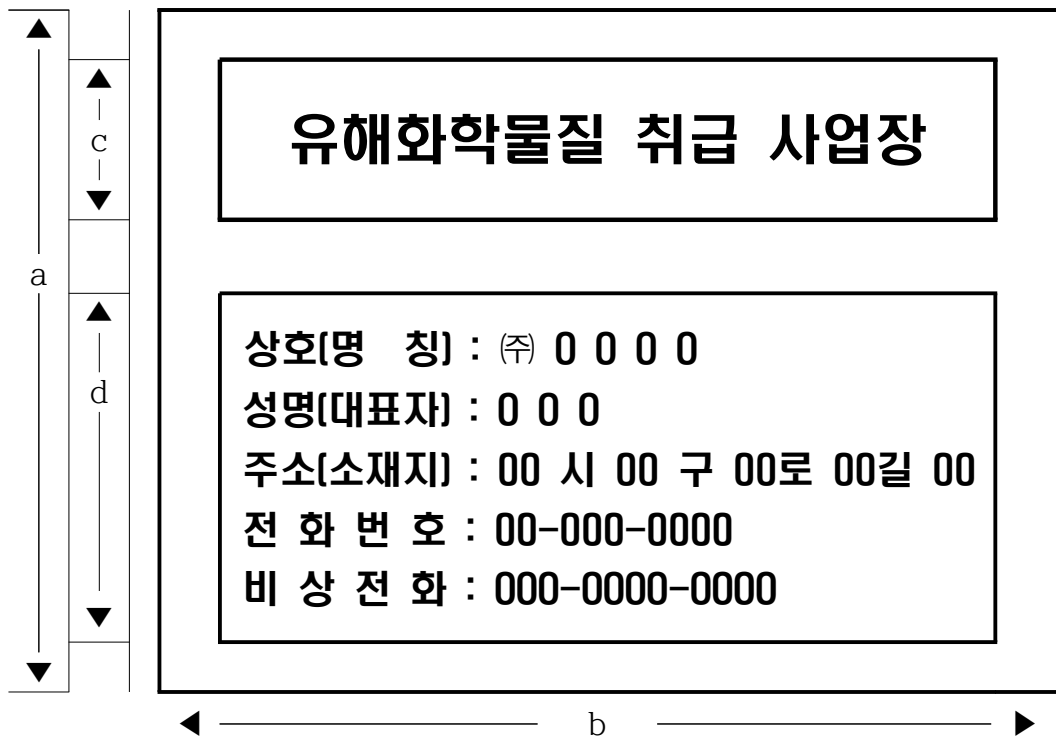
나) RTDG 적용을 받지 않는 물질

용기에 나목1)나) UN GHS에 따른 표지만을 부착해야 한다.

다) 비고

“단일용기”란 이중용기외의 용기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text{cm}$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 상호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1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2.2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gas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2.3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gas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gas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2.4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2.5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2.6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2.7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이 해당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2.9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 2.10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 2.13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 2.14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 2.15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 2.16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3.1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3.5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3.6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 3.7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3.10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 4.2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추가적인 유해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제19조의2제2항 관련)

1. 기본정보

가. 일반정보 및 개요

- 1) 사업장 일반 정보는 사업장명, 작성수준(1군·2군 사업장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취급시설 개요는 공정개요, 장치·설비 종류 및 유해화학물질 목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만,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운영단위에 따라 나누어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단위의 취급시설 개요를 추가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1)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명 및 종류, 취급량, 물리·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 분류 기준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큰 대표 2종 물질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취급시설 입지 정보

- 1) 전체배치도는 건물 및 설비 위치, 건물 사이의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설비배치도는 공장, 공정 또는 구역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의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배치도 대비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3) 주변 환경정보는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내의 사업장 주변 지역의 시설물의 위치도 및 명세, 주민분포, 자연보호구역 등의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시설정보

가. 공정정보

- 1)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공정도면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장설비 및 제어설비, 물질 및 열 수치,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 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를 작성한다.
- 3) 장치 설비 목록 및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작성하되 취급시설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장치 현황

- 1)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및 배치도는 누출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4)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 및 플레어 스택 등 배출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용량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장외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 1)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분석 및 대상설비 선정은 시설정보, 취급시설 별 취급량 등을 이용하여 예비위험성 분석을 하고 대상설비를 선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사고시나리오 분석은 운전조건, 기상조건, 입지조건 등을 반영하여 대상설비별로 분석하고,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를 산정하여 총괄영향범위를 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은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의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목록 및 인원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분석

위험도 분석은 시나리오별 사고 영향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의 인자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각각 점수화하여 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 1)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안전관리에 대한 단계별 계획 및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안전관리 방향성에 따른 세부 운영은 1)에 따른 세부적인 안전관리 운영방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수립내용 실행 및 변경관리는 각 운영방침에 대한 실행, 변경관리 및 고찰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계획과 실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5)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개선 계획은 상기 항목 이외에 사업장에서 추가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나. 비상대응체계

- 1) 비상연락체계는 사업장 내부 및 사고 시 유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공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 목록과 역할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은 화학사고 예방·대응 담당자 및 연락처, 통제실 운영, 유사시 실제적으로 투입이 가능하고 임무에 맞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과 조직 및 공조 활동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내부 비상대응 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 1)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여부는 인근사업장 등과 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 수립 대상 사업장명, 사고영향범위 공유 여부, 방재자원 상호 지원, 합동훈련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3)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장비

및 인력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현황 및 배치도, 누출 차단 또는 확산방지 절차, 통신망 운영계획, 자체방재능력 확보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신속한 사고전파를 위하여 사내 경보시설의 종류, 경보전달방법 및 경보전달 담당자, 경보시설 유지관리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 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응·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수동 차단시스템, 내·외부 확산차단, 2차 오염 방지대책, 비상대피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1)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 및 업무,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항목 및 작성방법,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 복구 계획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력, 복구 전담팀의 구성 및 업무, 폐기물처리업체·토양환경복원 업체 목록 및 사전계약 여부·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부 비상대응 계획

가. 지역사회와 공조

1)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주민대피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자 지급,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지역사회와의 소통계획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해 지역 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주민, 언론 등과 정보 공유 계획, 지역협의체 또는 환경안전관련 회의 참여계획, 화학안전문화 캠페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지역 비상대응기관, 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 계획은 소방응원출동 협정 내역, 자사 보유 자원의 타사 지원계획, 합동훈련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1)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사업장 인근 근로자와 주민을 구분하고 경보전달시설의 종류 및 유지관리방법, 경보전달 방법, 절차 및 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경보전달체계 지원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인체보호 및 행동요령, 대피 시 유의사항 등을 작성한다.
- 3) 응급의료 계획은 응급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병원, 종합병원 등 응급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병상, 환자후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4)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인원, 지상·지하 여부, 민방위대피소 해당 여부, 인원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 관리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지역사회 고지 계획

- 1) 고지 대상 및 방법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정보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목록과 고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2) 고지 정보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영향범위, 비상대응 계획,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등을 발췌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제19조제3항의 주요취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호 외부비상대응계획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2.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

대한 경우

-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상태를 평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 정지 15일	허가 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영업정지 1개월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영업정지 1개월

<p>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p>	<p>경고</p>	<p>경고</p>	<p>15일 경고</p>	<p>영업정지 5일</p>
<p>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p>		<p>경고</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p>				
<p>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p>		<p>경고</p>	<p>경고</p>	<p>영업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정지 1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p> <p>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6호</p>	<p>경고</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5호, 법 제35조 제2항제7호</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8호</p>	<p>영업 정지 1개월</p>	<p>허가 취소</p>		
<p>자.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9호</p>				
<p>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p>	<p>영업 정지</p>

<p>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 · 운영한 경우</p> <p>차.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10호</p>		<p>15일</p>	<p>3개월</p>	
<p>1) 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2) 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p>		<p>영업 정지 1개월</p>	<p>영업 정지 6개월</p>		
<p>카.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5조 제2항제11호</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3개월</p>	
<p>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6호, 법 제35조 제2항제12호</p>	<p>개선 명령</p>	<p>경고</p>	<p>영업 정지 5일</p>	<p>영업정지 1개월</p>
<p>파. 법 제27조에 따른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p>	<p>법 제34조의2 제1항제7호, 법 제35조</p>	<p>개선 명령</p>	<p>영업 정지 15일</p>	<p>영업 정지 1개월</p>	

하.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제2항제13호 법 제35조 제2항제14호	허가 취소				
거.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8 호, 법 제35조 제2항제15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너.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8호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머.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9 호, 법 제35조 제2항제19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버.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법 제34조의2					

지키지 않은 경우	제1항제10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 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호, 법 제35조 제2항제20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 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서.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 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 호의2				
1) 화학사고 발생 또는 발 생우려 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5일
2)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 은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허가 취소
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이행 여부 점검 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 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3) 그 밖에 위해관리계획 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 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어.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법	개선	경고	영업	영업정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제34조의2 제1항제5 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 호의3	명령		정지 5일	1개월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23 호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허가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1 호, 법 제35조 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2 호, 법 제35조 제2항제25호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법 제35조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제2항제26호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 금액 1억원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30일)	피해 금액 1억원 당 영업 정지 1일 (최대 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p>직업성 질병자가 동 시에 10명 이상 발생 한 재해</p> <p>나) 1명 이상의 사망자 가 발생한 경우</p> <p>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 학사고 조사단이 실 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 이 1억원 이상인 경우</p>		<p>영업 정지 15일</p> <p>피해 금액 5 천만원 당</p> <p>영업 정지 1일 (최대 90일)</p>	<p>영업 정지 1개월</p> <p>피해 금액 5 천만원 당</p> <p>영업 정지 1일 (최대 180일)</p>		
--	--	--	---	--	--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표의 규정수량은 사업장의 모든 사고대비물질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저장시설에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나. 표의 규정수량에도 불구하고 표의 제42호, 제43호 및 제44호의 물질은 상온·상압 조건에서 성상이 액체인 경우 *표시된 값을 규정수량으로 한다.

다.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수량 기준

(단위: 톤)

번호	사고대비물질[(영문명 및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하위 규정수량	상위 규정수량
1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히드(폼알데하이드)[Formalin; Formaldehyde ; 50-00-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	메틸히드라진(메틸하이드라진)[Methylhydrazine ; 60-3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3	포름산(폼산)[Formic acid ; 64-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4	메틸알코올[Methylalcohol ; 67-56-1]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5	벤젠[Benzene ; 71-43-2]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6	염화메틸[Methyl chloride ; 74-8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7	메틸아민[Methylamine ;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8	시안화 수소(사이안화수소)[Hydrogen cyanide ; 74-90-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6	3
9	염화 비닐(염화 바이닐)[Vinyl chloride ; 75-01-4] 및	2	400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0	이황화 탄소[Carbon disulfide ; 75-15-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1	산화에틸렌[Ethylene oxide ; 75-21-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2	포스젠[Phosgene ; 75-4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13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4	산화 프로필렌[Propylene oxide ; 75-56-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15	메틸에틸케톤[Methyl ethyl ketone ; 78-9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6	메틸 비닐 케톤[Methyl vinyl ketone ; 78-94-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0
17	아크릴산[Acrylic acid ; 79-10-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18	메틸 아크릴레이트[Methyl acrylate ;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19	니트로벤젠(나이트로벤젠)[Nitrobenzene ; 98-9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0	4-니트로톨루엔(4-나이트로톨루엔)[4-Nitrotoluene ; 99-99-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21	벤질 클로라이드[Benzyl chloride ; 100-44-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2	아크롤레인[Acrolein ; 107-0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20
23	알릴 클로라이드[Allyl chloride ;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4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로나이트릴)[Acrylonitrile ; 107-1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25	에틸렌디아민(에틸렌다이아민)[Ethylenediamine ; 107-1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26	알릴알코올[Allyl alcohol ; 107-1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7	m-크레졸(m-크레솔)[m-Cresol ; 108-39-4]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28	톨루엔[Toluene ; 108-88-3] 및 이를 8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29	페놀[Phenol ; 108-95-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	40
30	n-부틸아민(n-부틸아민)[n-Butylamine ; 109-73-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1	트리에틸아민(트라이에틸아민)[Triethylamine ; 121-4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2	아세트산 에틸[Ethyl acetate ; 141-7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0
33	시안화나트륨(사이안화나트륨)[Sodium cyanide ; 143-3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베를린 청(Ferric ferrocyanide) · 황혈염(Potassium ferrocyanide) · 적혈염(Potassium ferri-cyanide) 및 그 중 하나를 함유한 혼합물질은 제외한다.	2	20
34	에틸렌이민[Ethylenimine ; 151-5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5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Toluene-2,4-diisocyanate(2,4-TDI) ; 584-8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36	일산화탄소[Carbon monoxide ; 630-08-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20
37	아크릴로일 클로라이드[Acryloyl chloride ; 814-6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38	인화 아연[Zinc phosphide ; 1314-84-7] 및 이를 1%	4	20

	이상 함유한 혼합물		
39	메틸에틸케톤 과산화물 [Methyl ethyl ketone peroxide ;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0	디이소시아산 이소포론(다이아이소사이안산 아이소포론)[Isophorone diisocyanate ; 4098-71-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41	나트륨[Sodium ; 7440-2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2	염화수소[Hydrogen chloride ; 7647-01-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	400*
43	플루오르화 수소(플루오린화 수소)[Hydrogen fluoride ; 7664-3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	20*
44	암모니아[Ammonia ; 7664-41-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20*	400*
45	황산[Sulfuric acid ; 7664-9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6	질산[Nitric acid ; 7697-37-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0
47	삼염화인[Phosphorus trichloride ; 7719-1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
48	불소[Fluorine ; 7782-4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49	염소[Chlorine ; 7782-5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0	황화수소[Hydrogen sulfide ; 7783-06-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51	아르신 또는 삼수소화 비소[Arsine; Arsenic trihydride ; 7784-42-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2	클로로술폰산(클로로설폰산)[Chlorosulfonic acid ; 7790-94-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20

53	포스핀[Phosphine ; 7803-51-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54	옥시염화 인[Phosphorus oxychloride ; 10025-8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5	이산화 염소[Chlorine dioxide ; 10049-04-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	40
56	디보란(다이보레인)[Diborane ; 19287-45-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7	산화질소[Nitric oxide ; 10102-43-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58	니트로메탄(나이트로메테인)[Nitromethane ; 75-5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40
59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 6484-52-2] 및 이를 33%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0	헥사민[Hexamine ; 100-97-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	60
61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 7722-84-1] 및 이를 35%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2	염소산칼륨[Potassium chlorate ; 3811-04-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3	질산칼륨[Potassium nitrate ; 7757-79-1]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4	과염소산칼륨[Potassium perchlorate ; 7778-7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5	과망간산 칼륨[Potassium permanganate ; 7722-64-7]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200
66	염소산나트륨[Sodium chlorate ; 7775-09-9]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10

67	질산나트륨[Sodium nitrate ; 7631-99-4] 및 이를 98% 이상 함유한 혼합물	5	60
68	사린[O-Isopropyl methyl phosphonofluoridate ; 107-44-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69	염화시안[Cyanogen chloride ; 506-77-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0	니켈카르보닐[Nickel carbonyl ; 13463-39-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1	모노게르만 또는 사수소화 게르마늄[(Germane ; Germanium tetrahydride ; 7782-65-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2	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Tetrafluoroethylene ; 116-14-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3	트리플루오로보란(트라이 플루오로 보란)[Trifluoroborane ; 7637-07-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4	트리클로로 붕소[Boron trichloride ; 10294-3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4	2
75	헥사플루오로-1,3-부타디엔(헥사플루오로-1,3-부타다이엔) [Hexafluoro-1,3-butadiene ; 685-6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6	브롬[Bromine ; 7726-9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77	세렌화 수소(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78	이소프렌(아이소프렌)[Isoprene ; 78-7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79	1,1-디클로로에틸렌(1,1-다이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 75-35-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0	헥사메틸디실록산[Hexamethyl disiloxane ;	0.3	1.5

	107-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81	펜타카르보닐 철[Pentacarbonyl iron ; 13463-40-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2	오불화 브롬[Bromine pentafluoride ; 7789-30-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3	염화 티오닐(염화싸이오닐)[Thionyl chloride ; 7719-0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4	사염화 타이타늄(사염화타이타늄)[Titanium tetrachloride ; 7550-4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5	클로로피크린[Chloropicrin ; 76-06-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86	비닐 에틸에테르[Vinyl ethyl ether ; 109-92-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40
87	실란(실레인)[Silane ; 7803-6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8	디실란(다이실레인)[Disilane ; 1590-87-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89	디클로로실란(다이클로로 실레인)[Dichlorosilane ; 4109-96-0]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90	트리클로로실란(트라이클로로 실레인) [Trichlorosilane ; 10025-78-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1	메틸디클로로실란(메틸 다이클로로 실레인) [Methyldichlorosilane ; 75-5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2	메틸트리클로로실란(메틸트라이클로로실레인) [Methyltrichlorosilane ; 75-79-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3	트리클로로비닐실란[Trichlorovinylsilane ; 75-94-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4	에틸트리클로로실란[Trichloroethylsilane ; 115-21-9]	0.3	1.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95	테트라메틸실란(테트라메틸 실레인) [Tetramethylsilane ; 75-7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6	테트라클로로 실리콘(테트라 클로로 실리콘)[Silicon Tetrachloride; 10026-04-7]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0.3	1.5
97	테트라플루오로 실리콘[Silicon tetrafluoride ; 7783-6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0.2	1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운반업체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성명 및 연락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수량(kg)	휴대용 방제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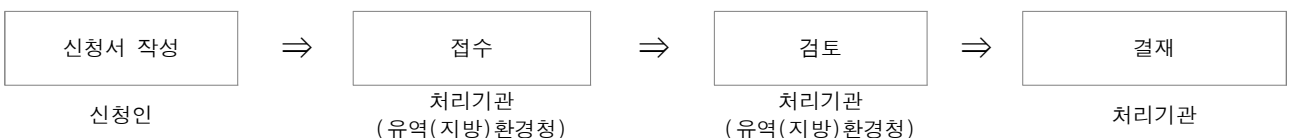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운반업체는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	-----	-----	----------

제출방법 [] 화관법 민원 24 [] 비전자문서 제출

신청인	상호(명 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전자우편주소
	주소(취급시설 소재지)		
관할지방환경관서 : () 유역(지방)환경관서 / ()합동방재센터			

신청내용	제출구분	[] 신규제출	[] 부적합 후 재제출
		[] 재제출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 5년 재제출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제출수준	[] 1군	[] 2군
	영업허가 대상	[] 영업자(영업허가 대상)	[] 비영업자(영업허가 면제대상)
	공동비상대응계획수립여부	[] 해당(별첨자료 첨부)	[] 미해당
	제19조의2제5항 검토생략 대상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 미해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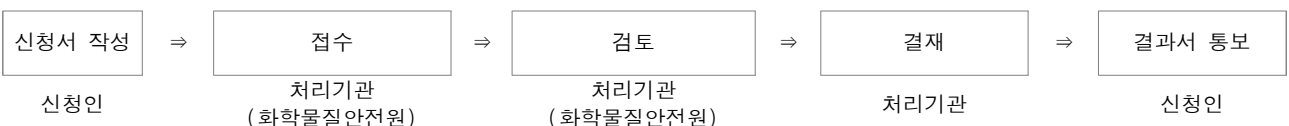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수료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별지 제31호의2서식,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공정안전보고서 및 안전성향상계획 해당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31호의3서식,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없음
	6. 비상대응분야 요약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비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신청인 정보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2.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 개요

총괄 사업장		총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대상 지역		대상 산업단지	
대상 사업장 수		최종 작성일	
공동 활용 비상대응정보	<input type="checkbox"/> 사고영향범위 공유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동 고지		
	<input type="checkbox"/> 사고전파·알림 지원 <input type="checkbox"/> 방재자원 및 대응 지원		
	<input type="checkbox"/> 실내 대피장소 지원 <input type="checkbox"/> 공동 사고대응훈련 실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	심사기관
	대상 공장(공정)	심사통지일
	대상 물질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결과 통지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검토결과 상세내용

(뒤쪽)

1. 검토결과표

검토항목	검토기준	적합 여부
일반정보 및 개요	사업장 일반 정보는 작성수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취급시설 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은 대표 2종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취급시설 입지 정보	전체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간 거리 및 위치 등이 적절한지 여부	
	주변 환경정보가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내 사업장 주변지역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정정보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공정도면이 취급시설의 취급량, 물질수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가 단위공정별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산 방지시설의 위치 및 정보포함 여부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감지시설의 위치와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용량 및 설치가 적절한지 여부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배출물질 처리시설 목록 및 용량 등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분석 및 대상설비 선정은 취급시설 별 취급량 등을 이용한 예비위험성 분석과 대상설비 선정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시나리오 분석은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은 개별시나리오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내 수용체 별 목록 및 인구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위험도 분석	위험도 분석은 사고영향점수 및 사고발생빈도 점수, 위험도 판정표 적용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안전관리 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은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단계별 계획 및 방향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안전관리 방향성에 따른 세부 운영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수립내용 실행 및 변경관리는 운영방침에 대한 실행, 변경관리 및 고찰 계획 등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사고대비 교육 및 훈련 계획, 실적 작성내용의 적절여부	
비상대응 조직체계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개선이 있는 경우,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비상연락체계는 유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목록 및 내용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사고대응 및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한 경우, 작성 내용이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	

응급조치 계획	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에서 비상상황의 필요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보유현황, 배치도, 확보계획 등 작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 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방법, 담당자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계획은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별 차단시스템 및 2차오염 방지대책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은 사고조사팀 구성, 업무, 개선대책 및 환류계획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복구 계획은 사고발생 시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인력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은 지역 비상대응 기관 및 주민 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 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가 유지관리방법, 경부방법 및 절차 등 작성 내용의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인체보호 및 행동요령, 대피 시 유의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은 응급의료기관 목록 및 연락망, 환자후송계획 등을 포함하여 내용의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작성이 실현가능도록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은 고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고지 정보가 작성해야하는 정보의 누락 없이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2. 조건부 적합 내용

연번	검토항목	내 용

3. 부적합 내용

연번	검토항목	내 용

4. 유해화학물질 취급목록

연번	유해화학물질명(국문명)	CAS 번호	고유번호

(앞쪽)

요청 번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주소 (취급시설소재지)	(전화번호 :)		
제출수준	[] 1군	[] 2군		
대상물질수				
수정·보완 제출 기한	년 월 일 까지			
<p>「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번호, 접수일)의 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p>				

210mm×297mm[백상지 80g/m²]

(뒤쪽)

수정 · 보완 상세내역		
연 번	검 토 항 목	수 정 · 보 완 사 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210mm×297mm[백상지 80g/m²]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처리기간(30일)
------	-----	-----	-----------

제출방법 [] 화관법 민원 24 [] 비전자문서 제출

신청인	상호(명 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성명(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주소(취급시설 소재지)				
	(최종) 적합결과번호		(최종) 적합 일자		
	영업허가 대상		영업자 / 비영업자		

변경 [] 제출수준 변경: 기존 () 군, 변경 () 군

구분 [] 이외 기타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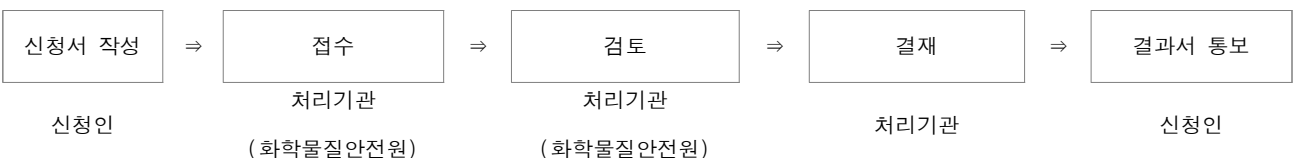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3.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별지 제31호의2서식, 해당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4. 비상대응분야요약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비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상세내역>

장외영향평가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위험도

위해관리계획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으로 기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상세내역>

적합 결과번호	제출수준	위험도	상세내용	적합날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품목추가		
시설추가		
취급저장량 증가		

검토결과 상세내용

(뒤쪽)

1. 검토결과표

검토항목	검토기준	적합 여부
일반정보 및 개요	사업장 일반 정보는 작성수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취급시설 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은 대표 2종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취급시설 입지 정보	전체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간 거리 및 위치 등이 적절한지 여부	
	주변 환경정보가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을 기준으로 반경 내 사업장 주변지역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공정정보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공정도면이 취급시설의 취급량, 물질수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가 단위공정별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산 방지시설의 위치 및 정보포함 여부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감지시설의 위치와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안전밸브 및 파열판의 용량 및 설치가 적절한지 여부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배출물질 처리시설 목록 및 용량 등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분석 및 대상설비 선정은 취급시설 별 취급량 등을 이용한 예비위험성 분석과 대상설비 선정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시나리오 분석은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범위 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내 수용체 확인은 개별시나리오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내 수용체 별 목록 및 인구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위험도 분석	위험도 분석은 사고영향점수 및 사고발생빈도 점수, 위험도 판정표 적용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안전관리 계획	위험도 분석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은 위험도 감소를 위한 단계별 계획 및 방향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안전관리 방향성에 따른 세부 운영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수립내용 실행 및 변경관리는 운영방침에 대한 실행, 변경관리 및 고찰 계획 등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사고대비 교육 및 훈련 계획, 실적 작성내용의 적절여부	
비상대응 조직체계	안전관리를 위한 추가 개선이 있는 경우,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비상연락체계는 유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목록 및 내용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사고대응 및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한 경우, 작성 내용이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	

응급조치 계획	는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에서 비상상황의 필요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보유현황, 배치도, 확보계획 등 작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 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방법, 담당자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대표 공정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응급조치계획은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별 차단시스템 및 2차오염 방지대책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계획은 사고조사팀 구성, 업무, 개선대책 및 환류계획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복구 계획은 사고발생 시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및 인력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활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와의 소통 계획은 지역 비상대응 기관 및 주민 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 비상대응기관, 인근 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가 유지관리방법, 경부방법 및 절차 등 작성 내용의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인체보호 및 행동요령, 대피 시 유의사항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은 응급의료기관 목록 및 연락망, 환자후송계획 등을 포함하여 내용의 누락없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의 작성이 실현가능도록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대상 및 방법은 고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고지 정보가 작성해야하는 정보의 누락 없이 알기 쉽게 작성 되었는지 여부	

2. 조건부 적합 내용

연번	검토항목	내 용

3. 부적합 내용

연번	검토항목	내 용

제조업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사용업 **허가신청서**
 보관·저장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① 업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②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③ 취급품목명	④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³	
	종업원수	명	사업장면적	m²	
	⑤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m³	⑥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m³
	⑦ 매출액(사업장)	억원			
	⑧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용량	유해화학물질명	
		또는 명칭	(톤, m³, m²)		
	⑨ 관리자공동 활용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⑩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⑪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1군 또는 2군 취급시설이 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적합판정을 받은 취급시설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1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취급시설 명세서에는 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및 취급시설별 매출액 기여도 1부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1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p>수수료</p> <p>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p>
<p>담당 공무원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사본을 제출합니다) 후견등기부 	

행동정보 공유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유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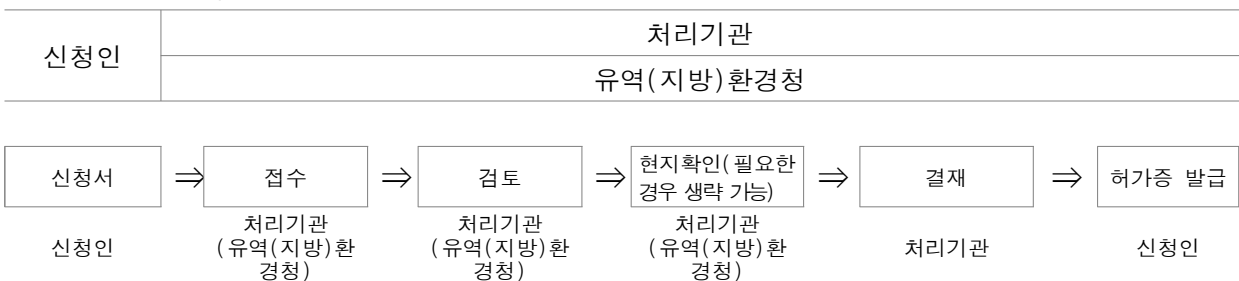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 ③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④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 ⑤란은 ②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적습니다.
- ⑦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⑧란은 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저장시설에 대하여 적습니다.
- ⑨란 및 ⑩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 ⑪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허가번호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허가증 유해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증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제 호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업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가 <input type="checkbox"/> 위탁 <input type="checkbox"/>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m ³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m ²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m ³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m ³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m ³ , m ²)	유해화학물질명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취급시설 공동 활용 여부	<input type="checkbox"/> 단독 <input type="checkbox"/>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또는 제29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운반업 <input type="checkbox"/> 허가 <input type="checkbox"/> 판매업 <input type="checkbox"/> 사용업 영업을 <input type="checkbox"/> 변경허가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보관·저장업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용하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를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1부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원본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되며,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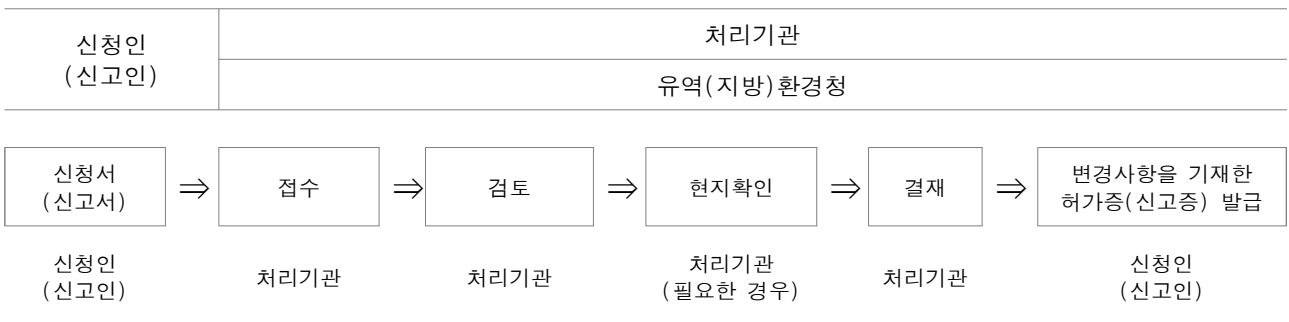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허가번호 :
6. 변경신고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급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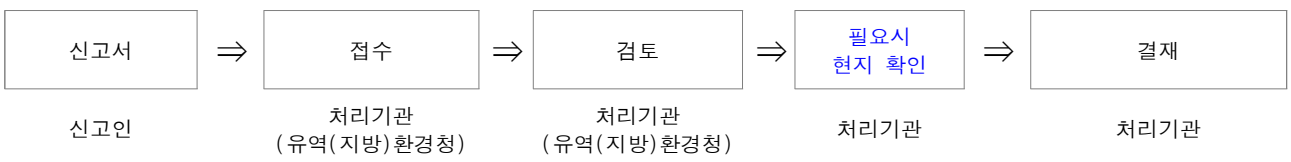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p> <p>① (생 략)</p> <p>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u>환경부장관</u>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p> <p>1. 2. (생 략)</p> <p>③ <u>환경부장관</u>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p> <p>④ (생 략)</p> <p>제19조(<u>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u>) ① <u>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u>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p>	<p>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화학물질 안전원장</u>----- -----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u>화학물질안전원장</u>-----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u>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대상 및 수량 등</u>) ① <u>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p>

제31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신청서(이하 “검토신청서”라 한다)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1. 유해화학물질을 별표 10의 하위 규정수량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하위 규정수량 미만으로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릴 경우는 제외한다)
3.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외부에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운송·보관·진열하는 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에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 철도운송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포장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보관·

<신 설>

<신 설>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

진열하는 시설

9. 「농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판매업의 보관·진열하는 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3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갖춘 사업장

2.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③ 법 제2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별표 10의 상위 규정수량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
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
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
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
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
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가목
· 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
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
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
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
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
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
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
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

④ 유해화학물질 유해성과 취급
수량 등에 따라 취급 사업장을
달리 구분하는 판단기준 및 판
단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
시한다.

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
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
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
지서(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
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
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
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
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
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삭 제>

<삭 제>

<삭 제>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 (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의 보완·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7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제출방법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1호서식(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당시설의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2.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해당시설의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3.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변경
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4.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화학
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자: 이
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
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
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하여 고
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하는 자가 별표 4 제4호나목, 제
5호가목 · 나목 및 제6호가목 ·
나목 · 다목의 작성항목을 하나
의 사업장에서 작성하기 어렵거

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지역 내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사항에 대해 공동으로 작성하여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신청서와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나목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

(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⑦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 설>

작성, 제출방법,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같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증설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같은 사업장에서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등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범생산을 위한 변경 등 시장 출시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일시적인 변경으로 시범생산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경우

나. 같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4 제6

호나목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 중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되는 것으로 한다.

③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제출 대상, 내용,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가위험도·나위험도·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 서식(제19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3의3호서식을 적용한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에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을 말한다.

1.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거나 업무상 과실, 중과실 또는 취급시설의 취급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법에 따라 벌칙, 과징금·영업정지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화학사고 및 취급시설과 관련된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때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에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한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기한 내에 보완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
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사업장 기본정보 및 주변 환
경 정보에 관한 사항

2. 장외평가정보에 관한 사항

3. 비상대응 체계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
획서의 비상대응정보에 관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할 필요가 있다고 화학물질안
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
의2제5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
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
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나목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⑧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
원장이 검토하여 부적합 통보를

<신 설>

받은 자는 3개월 내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5(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하다고 심사받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스스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다만, 변경

할 내용이 제1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의 정기 점검(이하 “정기이행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서면점검: 매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가 스스로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점검한 자료를 받아 검토

2. 현장점검: 적합 통보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점검하고(나 및 다위험도 사업장은 제외한다), 그 이후는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실시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계획을 세워 이행 점검(이하 “특별이행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중 별도의 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결과 현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
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
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점검 결
과 개선·보완이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
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
치를 명령받은 자는 그 조치명
령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
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라 정기이
행점검 또는 특별이행점검을 완
료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
질을 취급·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점검

결과를 해당 관할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운영하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별표 7 제2호서목2)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용·방법·절차, 이행점검 결과의 통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9조의6(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등) 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적합통보를 받은 자 중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3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적합 통
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
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 내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범위 내
주민이 없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
법으로만 고지할 수 있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식으로 전
달

4.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하는 경우: 시청·구청·
군청 및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게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지는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고지해야 하는 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우편주소 제공, 공청회 개최, 관할 시청·구청·군청과 주민자치센터의 게시판 이용, 주민협의체 구성 등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할 경우에는 고지해야 하는 자가 서면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경우 이를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 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23조의 2제1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 설>

<신 설>

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내용·방법·절차·시기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3조의4제1항 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연락체계
2. 주민 보호 및 대피
3. 사고지원 및 복구
4. 비상대응 협의체계
5. 그 밖에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 제2항 후단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에 한정한다)을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 계획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매년

<신 설>

<신 설>

제20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및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

1회 이상 점검하여 변경된 사항을 보완하고,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선임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및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 제공 및 지원을 해야 한다.

<삭 제>

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다) 1부

3.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운영계획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삭 제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제20조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등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실태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0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 ①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근
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은 사람
이 소속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마
지막으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
준으로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
을 받아야 한다.

1. 최초교육: 고용된 날부터 6개
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최초교육 또는 직
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별 교
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 각각 16
시간으로 한다.

1.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필
수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심화과정

2. 별표 4의2 제1호가목2)의 지
원인력: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일반과정 또는 심화과정 중
교육대상자가 선택하는 과정

제20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 ①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
3호의4서식의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
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1. 상시근무 인력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
관의 명칭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대표자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에 따라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서 뒷면에 변경내
용을 기재하여 돌려줘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삭 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5(장외영향평가서의 거
짓 또는 부실 작성의 판단기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
단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20조의6(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
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
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
소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의 명칭,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
자 성명을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사실을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제20조
의2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외
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반

<삭 제>

<삭 제>

납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의4와 같다.

④ 법 제23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대행계약 당사자와의 합의 사실 및 대행업무의 내용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23조의4제3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⑥ 그 밖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단서 신설>

③ ~ ⑧ (생략)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생략)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9조제7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취급시설의 위험도에 대한 검토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매 4년으로 한다.

1.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제19조제7항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검토결과서(이하 이 항에서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매 4년
2. 중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

-----.

다만,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19조의4제1항 -----

--- 제1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
-- 결과 -----
-- 12년 -----.

1. 가위험도 -----
---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2. 나위험도 -----

터 매 8년

3. 저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검토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매 12년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신고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3. 다위험도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출해야 ----.

----- 통

보해야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

해야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

점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

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이 아닌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서식은 제1항 및 제2항의 자체점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서면이나 전자적으로 표기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 6.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② -----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
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후견등기부

③ ~ ④ (생략)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하 “위해관리계획서”라 한
다)의 작성항목 중 같은 항 제
3호에 따른 공정위험성 분석
자료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유출·누출 시나리오가 변경
된 경우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 확인해야 ----. -

----- 사업자등록증명---

----- 않는 -----

----- 해야 -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등록증명

3.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이 변경된 경우”란 제조·사
용시설, 보관·저장시설 및 운
반시설 등 취급시설의 용량·위
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변경 등의 사유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에만 해당하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 및 변경신고) ① -----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마. (생략)

<신설>

2.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생략)

나.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된 경우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었으나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시범생산용인 경우(시범생산의 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의 증가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2. -----

가. (현행과 같음)

나. 취급하는 -----

다. 제1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

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동일한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 증설,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 변경,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마. (생략)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마목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 및

라.·마.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

위해관리계획서(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하되,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이 추가되었으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장외영향평가서를 갈음할 수 있다)

3.·4. (생략)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확인한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생략)

<신설>

획서(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만 해당하되, 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로 변경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를 갈음할 수 있고, 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합하다고 검토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3.·4. (현행과 같음)

5. ----- 영업자가 -----

6.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변

<신 설>

<신 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취급시설은 변경완료일부터 가동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검사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말한다)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를 변경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검사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⑥ -----

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장외영향평가서(제1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출 대상

나.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의 제출 대상이 아닌 자

6. 7. (생략)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이 있는 경우에는

하는 규모 미만의 취급시설만 설치·운영하는 자. -----

-----.

<삭 제>

<삭 제>

5. -----

----- 제조·사용시설 및 보관·저장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6. 7. (현행과 같음)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

----- 7일

지체 없이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

이내에 -----

- 신고해야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출해야 -----.

다만,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한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이행해야 -----

안전교육(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함께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거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⑦ (생략)

제45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수량 기준)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6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위해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위해관리계획서 또는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별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을 ---.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확인 결과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주민이 없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8호에 따른 사항만을 포함한 위해관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공정안전보고서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안전성향상계획 2부 및 한국 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심사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정안전보고서·안전성향상계획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품목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추가되는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인 경우

3.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가 변경됨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7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사고대비물질의 보관·저장 수량 또는 연간 제조·사용 수량이 별표 10에 따른 수량기준 이상이 되도록 증가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삭 제>

① 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

2.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수량 등 취급시설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현장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장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검토결과서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여부에 관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검토기

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위해관리 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 중 별표 1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④ 삭 제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2. 법 제41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소산계획 및 조치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

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
정하는 사항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
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수정·보완기간을 적고 수정
·보완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
여 별지 제61호서식의 위해관리
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따
라 제출자에게 자료의 수정·보
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자
료의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
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
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검
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
의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의2(위해관리계획서의 이
행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사고대비물질별 수량 기준
은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
한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삭 제>

실시한다.

1. 최초점검: 위해관리계획서를 처음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4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적합 여부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실시

2. 정기점검: 최초점검 또는 직전 정기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실시. 다만, 환경부장관은 직전의 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6개월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점검시기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특별점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
가. 화학사고가 발생한 후 응급조치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물질이나 공정 등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

하는 경우 별표 11 제5호 및 제 9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 제3호나목에 따른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자는 주어진 기간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
에 따라 제출받은 조치 결과가
적절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고,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
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이행점검의 내
용·방법·절차, 이행점검 결과
의 통지 시기·방법, 시정조치
등의 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제48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
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
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 통
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를 고지하
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고지

<삭 제>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
및 응급대응 정보 요약서

2. 고지 대상 명단 및 고지방법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되, 개별사업장 또는 여러 사
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
다.

1. 서면통지하는 경우: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경우: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방
식으로 전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의 방법으로 고
지하는 경우: 일간신문, 화학
물질안전원 및 관할 시청·구
청·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
무소, 동사무소·면사무소를
통하여 전달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 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는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제5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

----- 8
월 31일-----제출해야-----
----.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③ (생략)

제54조(출입·검사) ①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1. ~ 4. (생략)
5. 장외영향평가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 변경검토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생략)

5의3.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인력의 교육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4.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 9. (생략)

10. 위해관리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1. ~ 14. (생략)

제6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54조(출입·검사)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5의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6.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 14. (현행과 같음)

제61조(규제의 재검토) -----
